

갑오개혁 이후 군사법제도(軍司法制度)의 개혁

-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을 중심으로* -

김 혜 영**

1. 머리말
2. 지방 군사조직의 해체와 「육군징벌령」의 반포
3. 대한제국의 수립과 「육군법률」의 제정
4. 일본법의 수용과 변형으로서의 「육군징벌령」
5. 자주적 군사법제도의 수립노력과 「육군법률」
6.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된 갑오개혁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조선의 군사조직은 중앙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분야의 개혁은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부국강병의 실현과 황제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속적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육군사관학교 사학강사

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897년에는 러시아 교관단의 훈련을 받은 시위대가 창설되었고, 1899년에는 대원수인 황제가 모든 군기(軍機)를 총괄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는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한편 이 당시 군사조직의 변화와 함께 군사법제도의 개혁도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1896년 1월 24일에는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이, 1900년 9월 14일에는 법률 제4호로 「육군법률」이 각각 반포되었다. 이 두 법령은 갑오개혁 이후부터 대한제국기까지 통틀어 군인들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명시한 유일한 군사법 법령임에도 불구하고¹⁾ 이 시기 군사정책 및 군사분야 관련 연구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군징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징벌령」의 경우 기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비교하여 균형법인 「육군법률」의 경우는 법사학계(法史學界)에서 연구된 바 있으나 법사학계에서도 갑오개혁 이후부터 진행되어온 사법제도 발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1905년에 반포된 「형법대전」의 전사(前史)로서 「육군법률」을 조명하고 있는 정도이다.²⁾

하지만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제정·반포된 시기는 전쟁을 통해

1) 1894년 7월 갑오개혁 이후부터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일본에 의한 고문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군사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조선 정부(대한제국 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군사법 법령에는 앞서 언급된 1896년 「육군징벌령」과 1900년 「육군법률」뿐만 아니라 1900년 「육군법원관계」·「육군감옥관계」, 1901년 「육군치죄규정」·「육군법원처무규칙」·「육군감옥규칙」, 1901년 「육군치죄세칙」·「육군법원소송규정」·「육군감옥세칙」 및 1900년 「육군헌병조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령들은 군사법의 작용을 위한 일종의 절차법 범주의 법령이며, 군인들의 각종 비행 및 범죄에 대응하는 ‘형벌’을 규정한 실제법 범주의 법령은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뿐이다. 이후 본 연구에서 ‘군사법 법령’이라고 언급될 경우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을 지칭함을 일러둔다.

2) 법사학계에서는 「형법대전」을 우리나라 근대초기의 최대 입법성과이자 조선왕조 최후의 종합법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법대전」이 반포되기까지 작성되었던 초안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형법대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지속성이라는 특징을 당대의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문준영, 「대한제국기 《刑法大全》 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정진숙, 「1896~1905년 형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刑法大全》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한편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도면희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도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은 논의되지 않았다.(도면희, 『1894~1905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우월한 군사력을 직접 경험한 조선이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군사분야의 개혁에 고군분투하였던 시기였다. 즉 군사력의 증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국왕을 비롯한 조정 관료 모두가 군사분야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제정·반포되었다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지 ‘일반형법의 전사(前史)’로서만 한정될 수 없다. 또한 일반형법과 군사법 법령은 그 시행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의 경우 당시 군이라는 조직이 가지는 상징적·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의 반포시기에 있었던 ‘갑오개혁’과 ‘대한제국의 개혁정책’이라는 당대의 시대적 조건 하에서 두 법령이 가지는 역사적 위상과 그 의의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과 3장에서는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제정·반포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당시 조선 사회 각 분야의 근대화가 일본의 것을 상당부분 수용 및 모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의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메이지(明治) 14년(1881)에 제정되었던 일본의 「육군징벌령」 및 「육군형법」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³⁾ 이를 바탕으로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의 각 조항들이 반영하고 있었던 조선 및 대한제국의 군사력 운용 형태 및 사회상을 『관보』 및 『독립신문』·『매일신문』·『황성신문』 등에 실린 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⁴⁾

3) 일본의 「육군징벌령」과 조선의 「육군징벌령」이 동일한 명칭으로 표기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하 일본의 「육군징벌령」은 「육군징벌령(일본)」, 조선의 「육군징벌령」은 「육군징벌령(조선)」으로 표기하였다.

4) 「육군징벌령」 전문은 『군부청의서』(奎17718 v.2)에, 『육군법률』 전문은 『육군법률』(奎16028)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군부청의서』(奎17718)는 1895년부터 1896년까지 군부에서 내각으로 보낸 청의문건을 내각 편록과에서 등서한 것이며, 『육군법률』(奎16028)은 1900년 9월 4일 법률 제5호로서 제정된 「육군법률」과 그 이후 수차례 걸쳐 제정된 「육군

2. 지방 군사조직의 해체와 「육군징벌령」의 반포

1894년 6월 청일전쟁 당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조선 측에 제시한 5개조의 내정개혁안에서는 “국내의 민란을 진정하고 안녕유지에 필요한 병비(兵備)를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⁵⁾ 또한 같은 해 7월, 조선 정부의 개혁주체였던 군국기무처는 의안(議案)을 통해 “지금 군사행정이 정비되지 못하여 군사들의 마음이 균일하지 못해 걸핏하면 규율을 위반하므로 빨리 변통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상주하였다.⁶⁾ 그리고 오토리 후임으로 부임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1894년 10월에 조선 측에 제출한 20개조의 내정개혁안에서 “군정(軍政)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⁷⁾ 같은 해 12월, 새로운 내정개혁을 앞두고 종묘에 고한 「홍범14조」에서도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정한다”는 개혁방향이 천명되었다.⁸⁾ 이렇듯 군사부문의 개혁은 갑오개혁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1895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당시 군사부문의 개혁은 지방제도의 개혁과 함께 지방 군사조직을 혁파

법률」의 관련 제규정을 한 책으로 묶어 간행한 법령집이다. 『육군법률』(奎16028)의 간행 연도는 서문과 발문에 표기된 1902년 6월 27일로 추정된다.

일본 측 페이지 14년의 자료는 『헌병요규(憲兵要規)』에 수록 있는 「육군징벌령」(1881년 達乙 제73호)과 「육군형법」(1881년 布告 제69호)을 이용하였다. 『헌병요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http://kindai.da.ndl.go.jp>) 및 교토대학(京都大學)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것을 참고하였다. 『헌병요규』의 범례를 살펴보면 『헌병요규』는 페이지 31년(1898) 8월 31일 현행법규 가운데 직무상 참고할 수 있는 제 법령들을 편집하여 발간한 것으로 총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헌병요규』의 간행연도는 1898년 이후로 판단된다. 『헌병요규』의 편집자는 다야마 무네토(田山宗堯)라는 사람으로 당시 경찰과 관련된 잡지를 발행한 경력이 있다. 「육군징벌령」과 「육군형법」의 경우 『헌병요규』 제1책에 수록되어 있으며 『헌병요규』에는 「헌법」·「황실전범(皇室典範)」뿐만 아니라 「해군징벌령」·「해군형법」 및 「형법」 등 사법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제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5) 『舊韓國外交文書』 2, 日案 제2906호, 1894년 6월 1일, 「內政改革力說 및 同綱領案提議」: 『高宗實錄』 卷31, 1894년 6월 21일; 『高宗實錄』 卷31, 1894년 6월 22일.

6) 『高宗實錄』 卷32, 1894년 7월 14일.

7) 『高宗實錄』 卷32, 1894년 10월 23일.

8) 『高宗實錄』 卷32, 1894년 12월 12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894년 6월 총제영 혁파를 시작으로⁹⁾ 1895년 3월에는 지방 수·육군의 최고 책임자인 5도유수(개성·강화·광주·수원·춘천)와 각 도의 관찰사를 비롯하여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방어사가 패용하는 비밀 병부(兵符)와 각 읍·진 수령·변장들이 사용하는 병부를 반부(頒符)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각 도에 보관중인 병부도 해당 각 감영에서 회수하여 중앙으로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감영·유수영·병영·수영에 있는 마패도 일체 반납하도록 하였다.¹⁰⁾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에는 감영·안무영 및 유수부의 폐지령이 반포되어¹¹⁾ 경기·충청·경상·전라·강원·황해·평안도와 함경남도의 8 감영과 함경북도의 1 안무영을 비롯하여 개성·강화·광주·수원·춘천의 5유수부와 전국의 관찰사·안무사·유수 이하의 관직이 폐지되었다.

지방 군사조직의 혁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895년 7월 15일에는 조선 수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전라·충청 3도 수군의 최고사령부인 「삼도수군 통제영에 대한 폐지령」이 하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서 「각 도의 병영 및 수영에 대한 폐지령」과 「각 진영에 대한 폐지령」 그리고 「각 진보에 대한 폐지령」도 7월 15일에 한꺼번에 반포되었다.¹²⁾ 그 내용도 앞의 「삼도수군 통제영에 대한 폐지령」과 마찬가지로 해당 수령과 그 관직을 폐지하며 소속 장교와 병졸도 해산하고 그에 소속되었던 군물·선박·해사(廩舍)·토지·금전·미곡과 딸린 각종 기록·장부 및 일체 물건 등을 군부 내지 탁지부로 이송하거나 관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지방에 소재하고 있던 전통적인 수륙군이 일거에 폐지되었으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각종 무기나 장비들도 회수되어 중앙의 군부로 반납하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전 구래의 지방 군사조직을 살펴보면 지방 최고군사령관이

9) 『高宗實錄』 卷31, 1894년 6월 22일.

10) 『高宗實錄』 卷33, 1895년 3월 1일.

11) 『高宗實錄』 卷33, 1895년 5월 26일.

12) 『高宗實錄』 卷33, 1895년 7월 15일.

라고 할 수 있는 병마·수군절도사 직책과 각 지방 요지를 방어하는 군지휘관인 영장(營將)의 직책은 관할 지역의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는 지방관인 관찰사와 수령이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갑오개혁 이전에는 지방 군사조직이 일반 행정조직과 미분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제도의 개혁은 지방 군사조직을 해체시키고 지방 군사조직과 일반 행정조직을 분리시켰다. 그 결과 기존에 관찰사 및 지방 수령이 겸임하고 있었던 군사지휘권도 제거되면서 이와 동시에 지방 군사조직도 해체되어 해산된 지방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기가 밀반출되어 불만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임오군란과 같은 잠재적인 폭동이나 반란을 사전에 종식시키고자 각 중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895년 3월과 5월에 걸쳐 병부와 마패를 회수하고 감영·안무영·유수영 등을 폐지하고 나서는 칙령 제110호 「군기 등 관사에 관한 건」을 반포하여 뇌관과 화약을 포함하는 전투용 총포와 도창을 직무상 이외에는 휴대하거나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¹⁴⁾ 또한 삼도수군 통제영 및 병영·수영·진보를 폐지시킨 후에는 군부령 제1호를 반포하여 어떠한 사안을 막론하고 해산된 군인들이 10인 이상 모이다가 발각될 때는 주동자를 조사하여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반포된 군부령 제2호를 통해서도 구영(舊營)소속의 해산 군인들이 휴대하였던 개인 군장이나 군기 등을 빠짐없이 반납하도록 하였다.¹⁵⁾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1895년 11월 단발령의 공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을미의병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았다. 의병봉기 초기에는 대부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개한 유생 및 배일세력 인사들이 참여하다가 이후에는 갑오개혁 과정에서 관직을 잃은 관료·이서층뿐만이

13) 이동희, 『한국군사제도론』, 일조각, 1982, 186~187쪽.

14) 『高宗實錄』卷33, 1895년 윤5월 3일.

15) 『官報』 제127호, 1895년 8월 2일, 部令.

아니라 지방 군사조직이 해체되면서 해산조치가 내려진 지방군도 의병에 참여하게 되었다.¹⁶⁾ 을미의병에 참여한 군인들은 개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개혁에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의병운동의 참여를 통해 이 같은 개혁을 중단시키고, 한편으로 눈앞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해산된 군인 중 前 영장(營將) 출신의 군인은 군의 통솔과 훈련, 군기(軍器)를 담당할 경험을 바탕으로 의병의 조직적인 활동에 기여하였으며, 포수층은 포군·민정(民丁)·유림군(儒林軍)로 이루어진 의병부대에서 의병의 주전투력으로 활동하였다.¹⁷⁾

이처럼 해산된 군인들이 전국 각지에 일어난 의병봉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앙군을 각 지역으로 파견하여 의병들을 진압하고자 하였다. 이에 1896년 1월 28일에는 중앙군인 친위대가 안동에 파견되어 의병부대 제1진을 격파하고, 다음날 29일에 제2진을 격파한 후 오후 8시에 안동부에 도착하였다.¹⁸⁾ 1896년 2월 17일에는 친위 제1대대 대대장 이남희와 중대장 신우균, 제2대대 중대장 이겸제, 김구현이 춘천의병을 공격하여 해산시키고 회군하였으며, 이에 고종은 2월 19일에 춘천부에서 돌아온 친위 제1·2대대와 공·마병대 사졸을 친히 포상하였다.¹⁹⁾ 하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에 비해 파견할 수 있는 중앙군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으며 의병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진압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미 1895년 9월에 반포된 「육군편제강령」²⁰⁾을 근거로 전국의 육군은 중앙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로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1896년 1월 7일에 각 지방에 남아 있는 구식군대의 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총리대신 김홍집과 군부대신

16) 을미의병은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와 명성황후의 국장문제, 그리고 갑오개혁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면서 표출된 사건이었다. 이상찬, 『1896년 의병운동의 정치적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참조.

17) 이상찬, 위의 논문, 156~173쪽.

18) 『高宗實錄』卷34, 1896년 1월 31일.

19) 『官報』제255호, 1896년 2월 22일, 彙報.

20) 『高宗實錄』卷33, 1895년 9월 13일.

서리 겸 탁지부대신 어윤중은 고종에게 진위대를 설치할 때까지 일단 중앙에서 무관을 파견하여 구식군대를 영솔하게 할 것을 건의하여 재가를 받았다.²¹⁾

이러한 상황에서 1896년 1월 24일에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별령」이 반포되었다. 「육군징별령」이 조선 정부 내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 반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896년 전후 지방제도 개혁으로 인한 지방 군사조직의 해체, 을미의병의 봉기 및 친위·진위대로 구분되는 전국적인 군 재편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육군징별령」을 통해 조선 정부는 해산된 지방군사력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병진압을 위해 지방에 파견되는 중앙군은 「육군징별령」을 근거로 부대의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면서 의병진압에 전력할 수 있었다.

갑오개혁 당시 내각의 의사결정은 1895년 3월 21일에 제정된 「내각사무관리규정(內閣事務辦理規程)」, 「각의제출장정(閣議提出章程)」, 「청의서조사병각의안조제규례(請議書調査并閣議案調製規例)」, 「각의결정장정(閣議決定章程)」, 「재가주청급지령장정(裁可奏請及指令章程)」²²⁾에 근거하여 왕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모든 안건은 내각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왕은 관여할 수 없었으며 다만 사후적으로 재가 또는 거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왕이 제출한 안건이라도 반드시 내각의 결정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²³⁾ 따라서 이 당시

21) 『請議存案』, 「各地方에 所有 餉 鍊兵을 鎭衛隊設置前에 派員領率케 하는 件에 대한 閣議決定案 제12호」, 1896년 1월 7일 軍部大臣臨時署理 度支部大臣 → 議政府; 『指令存案』, 「각 지방의 舊額鍊兵을 統轄하기 위하여 將領을 파견하고 병사들의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請議한대로 파견하는 將領의 旅費와 봉급을 모두 예산 내에서 지급하라고 각의에서 결정한 후 재가를 받았다는 指令」, 1896년 1월 8일 內閣總理大臣 金弘集 → 軍部大臣臨時署理 度支部大臣 魚允中; 『官報』 제217호, 1896년 1월 9일, 彙報.

22) 「내각사무관리규정」, 「각의제출장정」, 「청의서조사병각의안조제규례」, 「각의결정장정」, 「재가주청급지령장정」은 모두 『편년록』(奎17723 v.2)에 실려 있다. 『편년록』은 1895년 3월 21일부터 1896년 9월 24일까지의 내각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으로 총 4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23) 정근식, 『韓國近代法史攷』, 박영사, 2002, 69~72쪽; 왕현중,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반포된 「육군징벌령」의 경우도 을미사변 직후 성립한 김홍집 내각이 주체가 되어 을미의병을 비롯한 각종 소요를 저지할 목적으로 시급히 제정·반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육군징벌령」의 제정·반포 주체에 대한 특징은 후술하겠지만 「육군징벌령」의 각 조항이 메이지 14년에 제정된 「육군징벌령(일본)」의 각 조항과 거의 동일한 문구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대한제국의 수립과 「육군법률」의 제정

「육군법률」이 반포되기 전까지 군인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대전회통』과 『대명률』에 근거하여 처벌되었다. 『대전회통』의 「병진」·「형진」과 『대명률』의 「명례율」·「병률」·「형률」에서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각 사례별로 그 형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벌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기존의 법률이 군인의 범죄처벌에 대한 근거조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군형법으로서 「육군법률」을 제정한 경위에 대하여 「육군법률」의 서문에서는 ‘일정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육군참장 백성기는 「육군법률」 서문에서 “**군법에 이르러 오히려 한결같은 규정이 없으니 황제께서 이를 근심으로 여겨 지난 무술년 봄에 모자란 신(臣)성기에게 특명으로 위원장을 맡기셔서 군법을 기초하게 하셨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서문과 함께 실려 있던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241~245쪽 참조. 한편 이와 같이 갑오개혁기의 왕권을 제약하는 내각제도의 의사결정과정은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면서 서부터 일본의 정치적 간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자 왕권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896년 9월 24일에 반포된 칙령 제1호 「의정부관제」 제3관 제4조에 따르면 국왕은 내각에서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왕의 의지대로 안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토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1898년 6월 18일 「개정 의정부관제」, 1904년 3월 4일 칙령 제2호 및 1905년 5월 31일 칙령 제33호 「의정부회의규정」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1900년 9월 13일자 황제의 칙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직 완비되지 않아 **군법이 일정한 조규가 없으니**” 군법을 제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⁴⁾

보다 구체적인 「육군법률」의 제정경위에 대해서는 「육군법률」이 반포되기 전인 1900년 4월에 백성기가 올린 상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군법을 제정하는 문제입니다. 군사는 많고 적은 데 관계없이 규율이 없으면 통솔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이름난 장수는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면서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점령하였는데 이는 제정한 군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지금 지방에는 군부(軍部)를 두고 중앙에는 원수부(元帥府)를 두고 있으면서도 아직 군법을 제정한 것이 없으니 매우 군사를 기르는 방도가 아닙니다. 지난날 각 영의 병졸들이 간혹 죄를 짓게 되면 형조(刑曹)에 넘겨서 조율(照律)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거할 만한 법조문이 없고 또 굳어진 판례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처벌할 때마다 구차스럽게 마감(磨勘)하였습니다.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파면시키는 것도 이미 기준이 없으니, 가두거나 귀양 보내는 것인들 어찌 적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죄의 경중이 억측으로 정해지고 죄의 판결이 공의(公議)와 혹 어긋나기도 하니 언제나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는 탄식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각 부대의 대오가 각각 다르고 아직 일정한 규범이 없으니, 이 상태에서 군사를 통제한다면 이는 사실 법이 없는 군대이니 장차 어떻게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통제하며 목숨 걸고 싸우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군사에 관한 일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일입니다.²⁵⁾

백성기의 상소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군인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형조에서 일괄적으로 군인의 범죄를 판결하였으며,

24) 「육군법률」의 서문은 백성기, 민영환, 조동윤 총 3명이 작성하였으며, 「육군법률」의 서문 및 황제의 칙유는 모두 『육군법률』(奎16028)에 실려 있다.

25) 『高宗實錄』卷40, 1900년 4월 17일.

판결을 하더라도 기존 법률에는 각각의 군인의 범죄에 대하여 의거할 만한 마땅한 조문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 매번 이에 대해 상주하여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과정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는 일관성 및 공정성을 가질 수 없었고, 판결의 근거인 해당 법조문조차도 무의미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기존 군사법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형법인 「육군법률」이 군징계령인 「육군징벌령」과 동일한 시기에 제정·반포된 것은 아니었다. 1895년 갑오개혁 당시부터 이미 조선 정부는 징계처벌과 형사처벌이 구분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²⁶⁾, 군법의 제정은 『대명률』에서 이에 해당하는 조항을 참고하여 고치는, 즉 ‘축조(逐條)·고정(考訂)’방식을 통해 제정한다는 원칙이 제시된 바 있었다.²⁷⁾ 그러나 갑오개혁 당시 「육군징벌령」이 반포된 이후 군인의 범행에 대하여 징계처벌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형사처벌 수준의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대한제국이 수립된 1897년 이후였다.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같은 해 10월에 황제에 지위에 올라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각국 대원수의 예에 따라 황제가 육해군을 친총하겠다는 조칙을 근거로 1899년에는 원수부를 설치하였다.²⁸⁾ 이러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제도전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수반되었으며 군사부문에서도 1897년부터 이에 맞추어 기존의 군사조직이 정비되었다. 1897년 3월에는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교관단에 의해 훈련을 받은 중앙군을

26) 四十二. 懲罰令에 依호야 官吏를懲戒함과 法律에 依호야 處罰함에 二者 條理를區分하미 可할 事(『議奏』 卷5, 「官員의 懲罰·處罰을 區分하는 件」, 開國504年 3月29日)

27) 五十二. 明律 中 刑事에 屬호며 民事에 屬호며 軍律에 屬호며 行政辦理에 屬호는 者 …… 等を 分文別類호는 法에 依호야 逐條 考訂호 事(『議奏』 卷5, 「明律을 逐條 考訂하는 件」, 開國504年 3月29日)

28) 『高宗實錄』 卷36, 1897년 10월 12일; 『高宗實錄』 卷37, 1898년 6월 29일; 『高宗實錄』 卷39, 1899년 6월 22일.

근간으로 시위대가 새롭게 편제되었으며 시위대에는 포병·기병이 추가로 배속되어 전투능력을 보유한 부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²⁹⁾ 한편 지방군의 경우 1899년에 진위대와 지방대의 편제를 개정하는 칙령이 반포되면서 1898년 이전의 개편과정에서 서로 상이했던 지방대의 편제가 단일하게 정비되었다.³⁰⁾

하지만 이처럼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가 및 강력한 황권의 물리적 기반인 원수부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군사부문 전반이 정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조직의 구성원인 군인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직후인 1897년 3월에 의정(議政) 김병시는 당시 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오늘의 군사 제도는 모두 다른 나라의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일(專一)하게 숭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수와 군졸들은 한갓 각기 사사로이 도당을 만들어 서로 그 기예를 자랑하여 점점 시기하는 마음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보는 것 또한 후하고 박한 구별이 없지 않습니다. 후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박하게 한 사람은 원망을 품기 쉽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마음으로 그 힘을 전일하게 함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돌봐

29) 「侍衛隊編制·豫算을 軍部·度支部로 하여금 磨鍊케 하는 件」, 『詔勅』 4冊, 1897년 3월 16일. 시위대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던 1896년 10월부터 러시아에서 초빙한 군사교관에 의해 러시아식으로 훈련받은 군사들을 기반으로 창설되었다. 러시아 교관들은 당시 중앙에 주둔하고 있던 5개 대대 3,300여 명 중에서 하사관 및 병사 8백 명을 선발하여 러시아식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차출당한 중앙군 5개 대대는 1896년 3월에 2개 대대를 증설하여 5개 대대로 증편된 친위대이며, 이 친위대에는 일본식 군사훈련을 받은 구 훈련대원들이 모두 편입되었다. 아직 시위대로 명명되지 않은 이들은 러시아 교관 1명에 80명이 배정되어 러시아군 신병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각개교련·체조·총기 조작법·소총 분해결합·소총사격법 등의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은 이듬해 1897년까지 계속되었으며 2월에 이르러 2백명을 추가로 모집하였으므로 총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한지 1개월이 경과한 후 1897년 3월 16일 조칙에 근거하여 시위대로 명명되었다.(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178~189쪽)

30) 『高宗實錄』 卷39, 1899년 1월 15일.

주는 것을 고르게 하여 사사로운 데 치우치는 것이 없게 한 후에야 윗 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 죽으려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³¹⁾

주지하다시피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근대적인 군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일본의 군제가 도입되었다가 아관파천 이후에는 다시 러시아 군제가 도입되었다. 김병시는 이렇게 불과 1~2년 사이에 군제가 뒤 바뀌는 혼란으로 인해 장수와 군졸들이 서로 단합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이에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1899년 4월 30일에는 급기야 시종원에 입직(入直)한 친위대 병사와 수도인 한성에 주둔한 평양 진위대 병사 사이에서 편싸움이 일어나 도합 10명이 크게 다쳐 제중원에서 며칠 동안 치료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³²⁾ 이 사건에 대해 군부대신서리 군부협판 주석면은 “진실로 그 군사들로 하여금 부대가 기율이 있어 두렵고 꺼릴 바를 알면 어찌 이런 의외의 일이 있사 오리까, 평양 출병병과 시종원 입직병이 엄숙해야 할 때에 서로 시비를 걸어 소란을 일으켰으니 그 죄가 하나이라 법률과 기율이 방자하고 군규가 없으니 이는 가히 쉽게 처단하지 못할 것이다”³³⁾라고 하며 군인이 기율이 없고 군규가 제대로 서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³⁴⁾

또한 이 당시 군인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문제도 적지 않았다. 대체로 군인의 음주는 군인 간 또는 민인 및 순검의 구타로 이어졌는데³⁵⁾, 한 신문에서는 병정들이 술을 먹고 행패부리다가 순검에 잡혀가는

31) 『高宗實錄』 卷35, 1897년 3월 16일.

32) 『독립신문』 1899년 5월 3일 잡보; 『독립신문』 1899년 5월 8일 잡보; 『독립신문』 1899년 5월 10일 관보.

33) 『독립신문』 1899년 5월 10일 관보.

34) 당시 군인의 비행과 범죄는 순찰병정이나 경무청의 순검이 단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순찰병정 및 순검과 군인간의 마찰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군부에서 중앙군인 시위·친위 각 대대 대대장에게 훈령하여 편싸움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상하는 폐단이 많아 경무청에서 편싸움을 금단하고 있으나 군인들이 서로 항거할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독립신문』 1898년 2월 3일 각부신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오피월급을 타가지고 처자식도 먹여 살릴 겨를이 없을 터인데 무슨 돈으로 술을 취하도록 먹고 죄를 범하였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더라”³⁶⁾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역토의 소출을 가지고 자체 경비를 조달하였던 지방대가 주민을 토색(討索)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당시 지방대는 역토를 운영하면서 마름을 자주 갈기도 하고, 역토를 묵혀버리기도 하고 해당 지방관서를 거치지 않고 병정들을 보내어 직접 민인들에게 그세를 받고 그 과정에서 구타를 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에 신문에서는 “당초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 각 처 지방대를 별도로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지금의 일로 보자면 각 처 지방대가 오히려 백성에게 크게 병되고 해롭게 함이라 더욱 한심하고 개탄할 일이다”라고 하며 지방대의 작폐에 대해 보도하였다.³⁷⁾

요컨대 「육군법률」은 「대전회통」 및 「대명률」과 같은 기존 법률에 근거한 군사법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가의 수립과 더불어 그 위용에 상응하는 군사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 수립 이후 증대된 군의 규모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한 군인들의 범죄는 군징계령인 「육군징벌령」만으로는 군인의 범죄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게 하였다. 즉 「육군징벌령」보다는 상위법 차원에서 군인의 범죄행위에 형사처벌의 근거를 제공할 균형법의 등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육군법률」에 대한 입법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898년 4월 26일부로 육군참장 백성기가 군법기초위원장에 임명되면서부터였다. 이때 백성기와 함께 참령 신태휴와 법무참서관 신재영, 고등재판소검사시보 윤성보, 군부마정과원 정위 김학안, 군부군법국원이사 홍우형, 前 탁지아

35) 『독립신문』 1897년 10월 2일 각부신문; 『매일신문』 1898년 1월 4일 잡보; 『독립신문』 1898년 4월 13일 잡보; 『매일신문』 1898년 11월 4일 잡보; 『매일신문』 1899년 3월 15일 잡보; 『독립신문』 1899년 8월 19일 잡보.

36) 『매일신문』 1898년 4월 13일 잡보.

37) 『독립신문』 1898년 7월 21일 잡보.

문주사 어윤적이 군법기초위원으로 임명되었다.³⁸⁾

『각부청의서존안(各部請議書存案)』과 『각부지령존안(各部指令存案)』의 기록에 따르면 1898년 6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군법기초위원 임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관보』에 확인한 군법기초위원들의 임명날짜인 4월 26일과 시간차가 있는 것이다.³⁹⁾ 그런데 『각부청의서존안』과 『각부지령존안』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법기초위원의 사무가 1898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전에 부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즉 군법기초위원들이 각자 군법기초작업에 참여한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군법기초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초의 시점은 1898년 4월경인 것이다.

군법기초위원이 활동한지 약 3개월 후 법무대신 조병직이 법부의 업무가 번거롭고 바쁘다는 이유로 신재영과 윤성보가 법부의 본래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청하여 신재영과 윤성보는 7월 13일부로 군법기초위원에서 해임되었다.⁴¹⁾ 이후 7월 23일부로 군법기초위원이었던 김학안이 해임되고 다시 신재영이 군법기초위원에 임명되었으며 신재영과 함께 법무주사 김응준도 군법기초위원에 임명되었다.⁴²⁾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이번엔 법무대신 한규설이 군부의 사무가 점점 정돈되어가나 법부의 사무는 번잡해지고 있으니 신재영과 김응준을 법부로 돌려보내 본래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청하여 이들은 곧

38) 『官報』 제982호, 1898년 6월 22일, 敍任及辭令.

39) 『各部請議書存案』 6冊, 「軍部 軍法局이 古수를 參작하여 軍法을 기초하도록 委員長 1인과 魏源 6인을 선정하겠다는 請議書」, 1898년 6월 17일 議政府贊政軍部大臣 副將 閔泳綺 → 議政府參政內部大臣 朴定陽; 『各部指令存案』 1冊, 「軍部에서 청의한 軍法局 법률 기초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을 임시로 擇定하는 일은 의정부 회의를 거친 후 상주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1898년 6월 20일 議政府參政 尹容善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閔泳綺.

40) 『各部請議書存案』 7冊, 「사무가 5월부터 9월까지 정해진 軍法起草委員 3명의 봉급을 예산의 지출하겠다는 請議書」, 1898년 7월 27일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閔泳綺 → 議政府 議政臨時署理參政 徐正淳; 『各部指令存案』, 「군법기초위원 5개월 봉급 1,368원 75전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일은 의정부 회의를 거친 후 상주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1898년 8월 3일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 徐正淳 →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閔泳綺.

41) 『官報』 제1001호, 1898년 7월 14일, 宮廷錄事.

42) 『官報』 제1012호, 1898년 7월 27일, 敍任及辭令.

해임되었다.⁴³⁾ 그리고 다음 해 1899년 2월에는 신태휴가 군법기초위원회에서 해임되었으며, 신태휴의 후임으로 다시 신재영과 김응준이 임명되었다.⁴⁴⁾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에는 어윤적이 해임되면서 군부관방장보 참령 한진창이 임명되었고⁴⁵⁾ 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에는 백성기를 비롯하여 한진창, 홍우형, 신재영, 김응준까지 모든 군법기초위원이 해임되었다.⁴⁶⁾

군법기초위원들이 임명되고 해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군법기초작업이 1차적으로 1898년 4월에 시작되어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약 2개월간 중단된 후, 다시 189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차 군법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육군법률」의 초안은 1899년 6월경에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육군법률」 초안은 완성된 다음 바로 반포되지 않았다. 이에 백성기가 1900년 4월에 군무에 관한 14개조를 상소하면서 「육군법률」의 시행을 촉구하였다.⁴⁷⁾

한편 백성기가 위와 같은 상소를 올린 같은 해 7월에 친위대 상등병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시위대 부위를 힐난하고 구타하는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군부대신은 “병정이 하사에게 방자하게 굴고 구타를 한 것은 군기를 범한 것이므로 중과(重科)로 다스리려고 하나 군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울이 없기 때문에 군부에서 알아서 처벌함이 어떠한지” 상주하였다.⁴⁸⁾ 이와 같은 내용은 「육군법률」의 반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육군법률」의 반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고종은 1900년 7월 21일에 조서를 내려 “군법을 이미 기초하였으나 사체가 신중하여 교정하지

43) 『官報』 제1120호, 1898년 12월 1일, 宮廷錄事.

44) 『官報』 제1174호, 1899년 2월 2일, 敍任及辭令.

45) 『官報』 제1229호, 1899년 4월 7일, 敍任及辭令.

46) 『官報』 제1291호, 1899년 6월 19일, 敍任及辭令.

47) 『高宗實錄』 卷40, 1900년 4월 17일.

48) 『官報』 제1631호, 1900년 7월 20일, 宮廷錄事.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이미 초안이 작성된 「육군법률」 초안을 교정하게 하였다.

이에 원수부회계국총장 민영환이 군법교정총재에, 육군참장 백성기가 군법교정부총재에 임명되었으며⁴⁹⁾, 23일에는 군부관방장 육군부령 한진창, 군부경리국제일과장 육군삼등감독 신재영, 법무주사 김응준이 군법교정관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모두 「육군법률」의 초안을 완성하고 1899년 6월에 군법기초위원회에서 해임된 인원들이었다.⁵⁰⁾ 군법교정관들은 1900년 7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활동한 후 군법교정작업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9월 14일과 15일 모두 해임되었다.⁵¹⁾ 그리하여 마침내 1900년 9월 4일 법률 제5호로 「육군법률」이 반포되었으며 잇달아 육군법원과 육군감옥이 설치되어 군형법의 집행기구도 마련되었다.

〈표 1〉 군법기초위원 및 군법교정관 활동 시기별 구분

시기구분	활 동 인 원
제1차 군법기초위원 활 동 시 기 (1898.4~1898.12)	1898.4 군법기초위원 임명 (백성기·신태휴·신재영·윤성보·김학언·홍우영·어윤적)
	1898.7 신재영, 윤성보 해임 1898.7 신재영, 김응준 임명
	1898.12 신재영, 김응준 해임 (1차 군법기초위원활동 종료)
제2차 군법기초위원 활 동 시 기 (1899.2~1899.6)	(2차 군법기초위원활동 시작)
	1899.2 신태휴 해임, 신재영·김응준 임명
	1899.4 어윤적 해임, 한진창 임명 1899.6 군법기초위원 해임 (2차 군법기초위원활동 종료)
군법교정관 활동시기 (1900.7~1900.9)	1900.7 군법교정관 임명 (민영환·백성기·한진창·신재영·김응준)
	1900.9 군법교정관 해임

출전: 『官報』

49) 『高宗實錄』 卷40, 1900년 7월 21일.

50) 『官報』 제1637호, 1900년 7월 27일, 宮廷錄事.

51) 『官報』 제1682호, 1900년 9월 18일, 敍任及辭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1898년에는 「육군법률」의 제정을 위한 군법기초위원이, 1900년에는 기초한 「육군법률」의 교정하기 위해 군법교정소 인원이 임명되었는데, 이때 군법기초위원과 군법교정관의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제시한 표를 살펴보면 1898년 7월부터 1900년 9월까지 「육군법률」의 초안작성과 반포에 이르는 작업에 꾸준히 활동한 사람은 백성기, 신재영, 김응준, 어윤적 4명으로 이들이 「육군법률」의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백성기와 신재영의 주요관직 경력

구분	백성기	신재영
주 요 관 직 이 력	1882 ~ 1885 賜第武科, 宣傳官	1883 ~ 1885 派往日本學海關事務及政治科
	1885 ~ 1888 鐵山府使, 宣傳官	1885 ~ 1895 外衙門主事
	1888 ~ 1893 總禦營千總 內禁衛將, 宣傳官	軍務衙門參議
	1893 ~ 1895 訓練院都正	軍部軍務局外國課長
	1895 ~ 1898 慶尙左道兵馬節度使	1895 ~ 1897 法部檢事局長
	甲山觀察使	法部法律起草委員
	成川郡守, 軍部協辦	1897 ~ 1898 法部參書官
	軍務局長	軍法起草委員
	1898 ~ 1901 軍法起草委員長	高等裁判所預備判事
	平理院裁判長	1899 ~ 1900 法部法務局長
軍法校正副總裁	法規校正所委員	
1901 ~ 1902 陸軍法院長	1900 ~ 1903 軍法校正官	
武官學校長署理	陸軍法院理事	
陸軍法院長	陸軍法院長署理	
軍務總長署理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출전: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국사편찬위원회, 1972.

<표 2>에서 제시된 백성기의 주요관직 경력을 살펴보면 1882년에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철산부사·금위장·훈련원도정·경상좌도병마절도사 등 꾸준히 무관으로서 관직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관직경력은 누구보다도 무관직의 실무자로서 「육군법률」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성기의 상소가 초안 작성 이후 계속 지체되었던 「육군법률」의 반포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일을 상기 하더라도 백성기가 「육군법률」의 제정과 반포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원수부가 설치된 이후 백성기는 군법기초위원장·군법교정부 총재의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육군법원장·원수부군무국총장·기록국총장·검사국총장 등 원수부 산하의 주요 요직에서 활동하였다.⁵²⁾

백성기가 그 관직경력을 바탕으로 「육군법률」의 초안작성 과정에서 군사실무적인 식견을 제공했다면 신재영과 김응준은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으로 이를 종합하는 작업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표에서 1차·2차 군법기초위원의 활동이 신재영·김응준의 임명과 해임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신재영의 경우 <표 2>를 살펴보면 1883년 일본에 건너가 해관사무와 정치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외아문주사직을 수행하였으며, 1895년부터는 법무검사국장 및 참서관 등 법부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99년 군법교정관에 임명된 이후부터는 원수부와 군부의 관직에 계속적으로 임명되었다.⁵³⁾

신재영과 비교해 볼 때 김응준은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없이 1885년에 을과에 합격한 이후로 계속 을관으로서 경력을 충실하게 쌓았다. <표 3>을 살펴보면 김응준은 1895년에는 법무주사로 임명되었으나 신재영과 마찬가지로 군법기초위원회에 임명된 이후부터는 1907년까지 육군법원이사직 등을 맡으며 군부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육군법률」의 초안작성 과정에서 기존 법률 즉 『대전회통』과 『대명률』 등과의 내용을 절충하는 작업은 을관으로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김응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⁵⁴⁾

52) 『大韓帝國 官員履歷書』 17冊·30冊, 국사편찬위원회, 1972. 백성기는 1900년을 전후하여 원수부 주요 요직에서 활동하다가 1903~1904년에는 平北觀察使·平北裁判所判事 및 忠北觀察使·忠北裁判所判事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1905~1906년에는 扈衛隊總管署理·警務使署理·軍部軍務局長으로 활동하다가 1907년에 다시 육군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 체결된 丁未條約으로 인해 군대가 해산된 이후 관직에서 물러났다.

53)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23·42冊, 국사편찬위원회, 1972. 신재영은 1904~1906년에 육군법원장서리, 내장원경, 육군법원이사 및 군부 참모국 및 관방장보·관방장으로 활동하였고, 1907~1921년에는 양주군수, 평양공소원 판사, 경성공소원 판사, 함흥군수, 고원군수의 직책을 맡았다. 1912년과 1915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및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을 받았다.

54)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5·19冊, 국사편찬위원회, 1972. 김응준은 1904년 육군법원이사직

〈표 3〉 김응준과 어윤적의 주요 관직경력

구분	김응준	어윤적
주요 관직 이력	1885 律科 合格	1894 度支衙門主事
	1886 ~ 1894 律學檢律, 律學審律 律學明律, 律學等第 律學別提, 慶尙道檢	1894 ~ 1898 慶應義塾 帝國大學
	1895 ~ 1897 法部主事 漢城裁判所主事	早稻田專門學校 留學
	1898 ~ 1900 法部主事 軍法起草委員 軍法校正官 刑法校正官	1898 ~ 1902 軍法起草委員 外部繙譯官補 外部繙譯官
	1902 ~ 1904 陸軍法院理事	1903 平式院祕務課長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출전: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국사편찬위원회, 1972.

어윤적의 경우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894년에 탁지아문주사로 근무하다가 1894년부터 1898년 초까지 일본에 건너가 경응의숙(慶應義塾)·제국대학(帝國大學)·와세다전문학교(早稻田專門學校) 등에서 유학을 하였다. 그리고 1898년에는 귀국하여 외부번역관보등과 군법기초위원을 겸임하면서 주로 외부에서 번역담당 업무를 맡았다.⁵⁵⁾ 어윤적의 일본 유학경험과 외부에서의 번역업무 경력, 그리고 제2차 군법기초위원들이 모두 그대로 군법교정관에 임명됨에도 어윤적만이 군법교정관에 임명되지 않은 사실들을 미루어보아 군법기초위원당시 어윤적이 담당한 업무는

을 맡은 이후에 1907년에는 육군법원장서리로 활동하였으며 1908년에는 대구지방재판소 판사, 대구공소원 판사직을 수행하였다. 1912년에는 전북 금산군수직을 맡았으며 이후 1941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12년과 1928년에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및 쇼와(昭和)대례기념장을 받았다.

55)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13册, 국사편찬위원회, 1972. 어윤적은 1904~1905년에 외부참서관 및 총영사관에 임명되었으며 1906~1907년에는 용천감리, 용천부윤, 용천항재판소 판사직을 맡았다. 1907년에는 學部 편집국장직을 수행하였으며 1910년부터 1935년 사망에 이르기까지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육군법률」 제정에 참고할 만한 일본의 제 법령을 번역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⁵⁶⁾

4. 일본법의 수용과 변형으로서의 「육군징벌령」

1896년 1월 24일 칙령 제11호로 반포된 「육군징벌령」은 제1장 법례(法例), 제2장 벌례(罰例), 제3장 범행(犯行)으로 총 3개장 17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장 법례에서는 「육군징벌령」의 정의와 적용범위, 징계권자의 권한 및 징계처분의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제1장 제1조에 따르면 「육군징벌령」은 군인·군속이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죄를 범했을 시 적용하며, 내부적 질서유지를 통하여 군인·군속을 본분의 태세로 회복시키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⁷⁾

제2장 벌례에서는 장교 및 상당관의 경우 중·경근신, 하사 및 상등병의

56) 外部에서는 1899년 3월 27일에 군법기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어윤적을 복귀시켜 繙譯官補로 서임하였다. 이에 軍部에서는 군법기초작업이 1朔 이면 끝나게 되니 그때까지만 어윤적이 군법기초위원을 활동할 수 있도록 外部에 조회하였다. 그러나 外部에서는 日文翻譯은 어윤적 밖에 없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照覆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1899년 4월에 어윤적은 군법기초위원에서 해임되고 外部 번역관보로 활동하게 되었다. (『外部來文』, 「官報에 『軍法起草委員 魚允迪, 任外部繙譯官補 敘判任官四等』이라고 게재하여 달라는 通牒 제41호」, 1899년 3월 25일 外部參書官 姜華錫→議政府參書官 趙秉圭; 『軍部來去文』, 「軍部 軍法起草委員 魚允迪을 外部에서 繙譯官補로 敘任하였으나 그 사무가 1朔 이면 끝나니 일을 마치게 해달라는 照會 제12호」, 1899년 3월 29일 議政府贊政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朱錫冕→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李道宰; 『軍部來去文』, 「軍部 軍法起草委員 魚允迪을 外部에서 繙譯官補로 敘任하였으나 그 사무가 1朔이면 끝나니 일을 마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日文翻譯은 魚允迪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照復 제15호」, 1899년 3월 31일 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李道宰→議政府贊政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朱錫冕)

57) 第一條 本令은 軍人軍屬이 故意며 過誤며 疏忽며 懈怠 등으로 輕히 罪를 犯히야 刑法에 該當치 아닌 者와 儻行이 不修히야 軍人의 體面을 壤損히 者를 其上官이 懲戒히는 罰則이니 其主는 部曲의 風紀를 維持히고 軍紀의 紊亂히를 豫防히호흡.

경우 중·경영창 및 금족, 병졸의 경우 중·경영창과 고역, 태벌의 벌목을 계급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벌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근신이란 근무를 정지하고 외출과 일체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창은 영창에 금고되는 것이며, 금족은 영내에 근신하여 훈련 이외에는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외출과 외래인의 면접 및 통신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벌은 부대원들이 정렬한 앞에서笞를 맞는 것이며, 고역은 훈련 이외에는 근무를 정지하고 외출을 금지하되 그 부대 내의 공공지와 오예물(汚穢物)을 청소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장 범행에서는 제16조 아래 총 33개항의 범행세목으로 정리하여 주로 군인으로서 복장이나 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에 미숙하여 제대로 직무수행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한편 메이지 14년(1881) 12월 28일 達乙 제73호로 반포된 일본의 「육군징벌령」의 경우 조선의 「육군징벌령」과 내용 및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우선 구성면을 살펴보면 조선의 「육군징벌령」이 제1장 법례, 제2장 벌례, 제3장 범행 총 3개장으로 구성된 것과 같이 일본의 「육군징벌령」은 제1장 법례(法例), 제2장 벌령(罰令), 제3장 범행(犯行) 총 3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일본의 「육군징벌령」과 조선의 「육군징벌령」은 유사한 문구와 단어를 사용하여 각기 조항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보아 1896년에 반포된 조선의 「육군징벌령」의 경우 1881년에 반포된 일본의 「육군징벌령」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육군징벌령(조선)」을 기준으로 「육군징벌령(일본)」과의 유사조항을 서로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비교한 내용과 같이 「육군징벌령(일본)」의 경우 「육군징벌령(조선)」에 비해 징계처분의 절차나 그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상황별로 규정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의 조항 비교

조항내용	「육군징벌령(조선)」	「육군징벌령(일본)」
적용대상과 목적	제1조	제1조
징계권자의 권한	제2조	제2조, 제3조, 제4조
징계처분이 가벼울 경우 징계권자에 의한 과벌 일수 조정	제3조, 제4조	제5조
현장 범행발생 또는 추가 범행 우려시 先영창 유치 처분 및 권한변경	제5조	없음
범행자가 소속부대를 옮긴 경우 징계처분 절차	없음	제7조
범행이 2개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한 가지 행위로 2가지 이상 범행이 발생할 경우	없음	제8조
징계처분 중에 戰時로 인해 복무할 경우 과벌일수 조정	없음	제10조
징계처분 중에 功績이 있거나 근면한 경우	없음	제11조
장교·相當官 벌목	제6조	제12조
하사·상등병 벌목	제7조	제13조
병졸 벌목	제8조	제14조
근신의 정의	제9조	제15조, 제16조
처벌의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없음	제17조
중·경영창의 정의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중·경영창 및 중·경근신 처분기준	없음	제22조
하사·상등병·병졸·생도·외영거주자가 영창처분을 받을 경우 영창을 금족과 고역으로 換刑	없음	제23조
금족의 정의	제12조	제24조
태벌의 정의	제13조	없음
고역의 정의	제14조	제25조
징계처분 이후 병졸의 佩劍 제한	없음	제26조
무관학교 생도의 처벌	제15조	제9조
범행 세목나열	제16조	제27조
시행 날짜	제17조	없음

즉 「육군징벌령(조선)」 제2조에서는 징계권자를 부대의 長에 해당하는 ‘부령이상·참령·정위 및 독립급과견대장’ 등으로 규정⁵⁸⁾하고 있는 반면에

58) 第二條 各軍各隊의 長은 左開權限을 從히야 處分히미 可흐

- 一 軍隊의 長을 當히 副領以上은 部下軍人軍屬을 五週日以內 謹慎營倉禁足苦役及一百以內 答罰에 處흐
- 二 軍隊의 長을 當히 參領은 部下將校를 三週日以內 謹慎이며 下士上等兵을 一週日以內 營倉禁足이며 兵卒을 五週日以內 營倉苦役 及一百以內 答罰에 處흐
- 三 軍隊의 長을 當히 正尉는 部下下士를 三週日以內營倉 或 五週日以內禁足이

「육군징벌령(일본)」은 제2조, 제3조, 제4조에 걸쳐서 징계권자를 ‘군단장·사단장·여단장·위수사령관·연대장·대대장·중대장·독립과견대장·헌병대·군악대’등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⁹⁾ 징계권자의 설정에 대한 두 징벌령의 이러한 차이점은 당시 징벌령의 적용대상이었던 군의 형태가 상이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육군징벌령(조선)」이 반포된 시기의 조선의 군대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지방 군사조직이 해체되면서 지방군사력이 일시에 해체되고 중앙군만이 주력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육군징벌령(일본)」이 반포된 당시 일본의 군대는 군비확장정책을 추진하여 군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군의 업무 및 병종이 이미 다양한 층위로 분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징계권자가 가지는 징계권한의 처벌한도를 비교해 보면 「육군징벌령(일본)」은 근신의 경우 최대 30일, 영창의 경우 최대 30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⁶⁰⁾ 반면에 「육군징벌령(조선)」은 근신·영창 모두 최대 5주

며 兵卒을五週日以内 營倉苦役 及一百以内 笞罰에 處호. 特立及派遣軍의 隊長을 當호 將校는 一等식은 上級者의 權限으로 施行호를 得호고 又上官의 職을 署理호는 將校는 該職에 相當호는 權限으로 執行호를 得호.

59) 第二條 各所營ノ長官軍團長師團長旅團長及ヒ衛戍司令官ハ部下ノ軍人此令ヲ犯ス者アル時之ヲ罰ス可シ

第三條 各軍隊ノ隊長ハ左ノ區別ニ從テ處分ス可シ

一 聯隊長ハ部下ノ軍人三十日以内ノ勤愼營倉

二 大隊長ハ部下ノ士官十日以内ノ勤愼下士二十日以内ノ營倉兵卒三十日以内ノ營倉

三 中隊長ハ部下ノ下士十日以内ノ營倉兵卒二十日以内ノ營倉獨立若クハ分屯ノ大隊長及憲兵隊長ハ第一項ノ獨立若クハ分屯ノ中隊長及分遣隊長タル中小尉竝ノ憲兵分隊長ハ第二項ニ軍樂隊長ハ第三項ニ同シ

第四條 前條ノ揭クルモノノ外ハ左ノ區別ノ從ツテ處分スハシ

一 將官竝ニ獨立ノ職ニ在ル上長官ハ前條第一項ニ同シ

二 獨立セサル職ニ在ル上長官竝ニ獨立ノ職ニ在ル士官ハ前條第二項ニ同シ

三 獨立セサル職ノ在ル士官ハ前條第三項ニ同シ

四 前各項ノ場合ニ於テ將官又ハ上長官ヲ以テ充ツル職ニ在ルモノハ將官上長官又ハ士官ヲ以テ充ツル職ニ在ルモノハ上長官士官又ハ准士官ヲ以テ充ツル職ニ在ル者ハ士官ニ同シ

五 一時限리部下ニ屬シ又ハ指揮下ニ屬スルモノノ懲罰ハ前條竝ニ本條ニ同シ

60) 第十五條 勤愼ハ勤務ヲ停メ他出及外人ト接見通信スルコトヲ禁ス其日數ハ一日以上三十日以下ト爲ス 重勤愼ハ俸給ノ半額ヲ減シ輕勤愼ハ其四分ノ一ヲ減ス

第十八條 重營倉ハ演習ノ外勤務ヲ停メ營倉ニ鎗シ寢具ヲ貸與スルコトナク唯飯及水鹽ヲ給ス其日數ハ一日以上三十日以下ト爲ス 但七十二時ノ内ニ二十四時間ハ輕營倉ニ移ス可シ

이내, 즉 약 35일을 그 한도로 정하고 있어 「육군징벌령(조선)」이 보다 상대적으로 징계권한의 처벌한도를 높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¹⁾

그리고 「육군징벌령(조선)」은 해당 범죄에 대한 징벌처분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장관이 과벌일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3조와 제4조에서 걸쳐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제4조에서는 소속장관이 상급 부대장에게 신고하기 전에 먼저 증가시킨 과벌일수를 공포할 수 있게 하였다.⁶²⁾ 반면에 「육군징벌령(일본)」은 제5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징벌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에 그쳤다.⁶³⁾

또한 「육군징벌령(조선)」에는 제5조에서 범죄가 현재 발생하거나 혹은 그 혐의가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연속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영창에 유치하는 조항이 존재한다.⁶⁴⁾ 이것은 「육군징벌령(일본)」에서는 유사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육군징벌령(조선)」은 「육군징벌령(일본)」보다 징계권자의 징계권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을 비교할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계급별로 차등 적용되는 벌목의 종류에 있다. 「육군징벌령(일본)」의 경우 장교를 제외한 하사와 병졸 모두 해당되는 벌목은 ‘중·경영창’뿐이나 「육군징벌령(조선)」은 하사 및 상등병·병졸의 벌목으로 ‘금족’과 ‘고역’, ‘태벌’이 부가적으로 조항에 명시되고 있다. 이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第十九條 輕營倉ハ演習ノ外勤務ヲ停メ營倉ニ錮ス其日數ハ一日以上三十日以下ト爲ス

61) 각주 58번 참조.

62) 第三條 凡懲罰處分을 經호거 든其長官은 卽時其所屬長官에게 申告호지니 若其犯行의 懲罰日數가 權限以外에 該當호출노 認호는 時라도 爲先其權限內로 處分호고 其所見을 附호야 稟告호미 可호 稟告호를接호는 長官은各權限을 從호야 其所罰日數를 增加호를 得호

第四條 凡懲罰處分을 經호거든 其長官 卽時其部下에 犯行과 科罰日數를 公布호미可호

63) 第五條 前二條ニ因リ處分ヲ爲シタル時ハ各秩序ニ從ヒ其屬スル所ノ上官ニ申報ス可シ若シ其犯行權限外ノ日數ニ該ル者ト認ル時ト須モ先ツ其權限ニ從テ之ヲ處分シ意見ヲ附シテ申報スヘシ申報ヲ受ケタル隊長長官ハ各權限ニ從ヒ其罰ヲ變更シ若クハ日數ヲ增加スルコトヲ得

64) 第五條 凡犯罪가 現發호거나 或嫌疑에 係호는 者가 其犯行을 連續호 念慮가 有호거든 姑先營倉內에 留置호는 在營長官의 本權限이되음 (所屬將校는本條를援用호를得지못호)

〈표 5〉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의 계급간 벌목 비교

구 분	장교 및 상당관	하사 및 상등병	병졸
「육군징벌령(조선)」	중근신 경근신	중영창 경영창 금족	중영창 경영창 고역 태벌
「육군징벌령(일본)」	중근신 경근신	중영창 경영창	중영창 경영창

〈표 5〉를 살펴보면 「육군징벌령(조선)」에서는 하사 및 상등병의 벌목에 중·경영창, 금족 3가지와 병졸 벌목에 중·경영창, 고역, 태벌 4가지의 벌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육군징벌령(일본)」에서는 하사 및 상등병, 병졸의 벌목에 모두 중·경영창만을 명시하면서 제23조를 통하여 금족과 고역의 경우 모두 영창처분으로 환형(換刑)받을 수 있는 벌목으로 따로 규정하였다.⁶⁵⁾ 즉 「육군징벌령(일본)」에 따르면 영창처분을 받은 하사, 상등병, 생도, 영외 거주자의 경우 영창처벌을 대신하여 금족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재영(在營) 병졸일 경우 이를 고역으로 바꿔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징벌령(조선)」은 「육군징벌령(일본)」과는 달리 명확하게 금족과 고역을 하사 및 상등병과 병졸에게 적용되는 벌목조항으로서 제시하였다. 이는 「육군징벌령(일본)」에 비해 「육군징벌령(조선)」의 경우 징계권자의 벌목선택의 폭이 넓으며 징계권자가 영창처벌과 관계없이 금족과 고역, 태벌을 자유롭게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태벌은 「육군징벌령(조선)」에만 있는 벌목으로 「육군징벌령(일본)」에서는 찾을 수 없다. 「육군징벌령(조선)」에서는 제13조에서 태벌에 대해 대개 ‘파렴치’한 범행자에 부과하는 벌목으로서 부대원들이 정렬해 있는 앞에서 형을 집행하며, 상등병이라 할지라도 그 범행이 ‘가악(可惡)’할 경우 태벌을

65) 第二十三條 營倉ニ處ス可キ者下土上等卒諸生徒及ヒ營外居住ノ者ナル時ハ禁足ニ在營兵卒ナル時ハ苦役ニ換フルコトヲ得 禁足苦役ニ處スル時其日數ハ重營倉ノ一日三日ニ輕營倉ノ一日ヲ二日ノ折算ス 禁足苦役ニ處スル時營內居住ノ者ハ其俸給十分ノ二ヲ減ス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⁶⁶⁾ 다시 말해 태벌의 기능은 그 범행의 동기가 고의적이고 교활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 부대원이 정렬하는 앞에서 태를 맞도록 하여 ‘수치심을 통한 교화’를 이끌어내는데 있는 것이다. 이는 『추관지(秋官志)』⁶⁷⁾에서 정의하는 태형의 기능과 동일하다. 『추관지』에서는 태형에 대해 “태(笞)란 수치이며 무릇 작은 허물은 매질을 해서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笞者恥也 凡過之小者 捶撻治之)”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징벌령(조선)」에 명시된 태벌 또한 『추관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수치심’을 통한 교화를 의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⁶⁸⁾

다음으로 해당 벌목에 병행되는 감봉조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66) 第十三條 笞罰은大概 破廉恥호 犯行者에게 科호는 者나 其處分호는 部隊가 整列호 압혀서 諸官이 會同호며 下士가 監視호야 上等兵으로 執笞케호고 (中隊에 在호야는 大概 週番下士며 上等兵으로써 行케호) 且其笞數 每十度에 給料二十分의 一을 日排로 減호(營外 居住호 者는 其半額을 減호) 笞罰은 大概 兵卒의 犯行者에게만 科호는 者나 上等兵이라도 其犯行이 甚히 可惡호 者에게는 行호를 得호
- 67) 『추관지』는 1781년(정조 5년)에 刑曹判書 金魯鎭이 朴一源에게 위촉하여 편찬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典章, 敎諭, 명신들의 論決, 律書, 禁條 등 형조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 68) 태형을 존속시키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사료는 1897년 1월에 완성된 「刑法草案」이다. 「형법초안」의 서문에서는 “頑梗호고 黠黠호자와 貧窶호고 恥心이 無호者 | 갓호는 罰金을 科호야도 資財가 無호고 拘留호면 도로혀 數日 食飮을 得호야 心切喜호호는 徒는 寧혀 刑罰로써 恩典에 化케 호는 奇觀을 모코즈 糞進호 笞를 措호고 良刑을 何에 求호리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무지하고 교활한 자와 가난하고 수치심이 없는 자들은 벌금을 부과하여도 이를 마련할 길이 없고 拘留하면 오히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 기뻐하기에 태형이 낫다는 말이다. 이는 1912년에 시행된 「朝鮮笞刑令」의 근거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태형이 가지고 있는 형벌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다시피 「육군징벌령(조선)」에 태벌이라는 벌목이 명시된 배경은 「형법초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태벌의 ‘형벌경제적인 효율성’보다는 「추관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치심을 통한 교화’에 있다.
- 「형법초안」은 1880년에 반포된 일본 舊刑法을 모방한 것으로 法部 顧問으로 활동한 호시 토오루(星亨) 및 노자와 게이이치(野澤鷄一)에 의해 1896년 2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897년 1월에 완성되었다. 「형법초안」은 그 체계와 내용으로 본다면 최초의 서구적 형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명률」과 「대전회통」을 통해 축적된 기존의 법질서와 상이한 점이 많아 당시 조선의 입법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법초안」 및 태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문준영, 앞의 논문, 36~46쪽; 염복규, 「1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운용」, 『역사와 현실』 53, 2004.

〈표 6〉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의 감봉비율 비교

구 분	「육군징벌령(조선)」		「육군징벌령(일본)」	
중근신	장교 및 상당관	봉급의 3분의 2減	장교 및 상당관	봉급의 2분의 1減
경근신		3분의 1減		4분의 1減
중영창	하사 및 상등병 / 병 졸	영내거주: 10분의 8減 영외거주: 10분의 6減	하사 및 상등병 / 병 졸	영내거주: 10분의 8減 영외거주: 2분의 1減
경영창		영내거주: 10분의 6減 영외거주: 10분의 4減		영내거주: 10분의 6減 영외거주: 4분의 1減
금 족		10분의 5減		영내거주: 10분의 2減 영외거주: 없 음
고 역		10분의 4減		영내거주: 10분의 2減 영외거주: 없 음
태 별	병 졸	영내거주: 매 10도에 20분의 1減 영외거주: 매 10도에 40분의 1減	X	

〈표 6〉를 살펴보면 「육군징벌령(조선)」이 「육군징벌령(일본)」보다 징계 처분에 병행되는 감봉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특히 「육군징벌령(조선)」에서 규정된 금족과 고역의 경우 영내·영외 거주자 구분 없이 감봉 비율을 명시하고 있는데다가 「육군징벌령(일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벌목보다 높은 비율로 감봉하고 있다. 그리고 태별의 경우 앞서 언급 하였다시피 「육군징벌령(조선)」에만 있는 벌목으로,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매 10도마다 감봉이 되게끔 명시하였다. 즉 「육군징벌령(조선)」에 따르면 하사 및 상등병, 병졸의 경우 금족, 고역 및 태별로 인한 신체적 제재와 함께 「육군징벌령(일본)」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의 감봉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장 제16조의 33개 범행세목의 경우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에서 명시된 내용이 거의 동일한 편이나, 「육군징벌령(일본)」에는 없고 「육군징벌령(조선)」에는 추가로 4개의 범행 세목이 명시되었다. 그 세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 1 항 刑法欸目에 準 糺만 糺 犯行으로 刑法에 該當치아닌者
 제28항 營舍며 營內를 汚穢케 糺야 衛生 糺는 法에 違 糺者
 제31항 技局을 設 糺야 金錢을 賭 糺者
 제32항 營內의 靜肅 糺를 害 糺는 者

제1항은 「육군징벌령(조선)」이 ‘형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범행에 적용됨을 언급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제1항의 내용은 「육군징벌령(조선)」 제1조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이렇게 한 법령에서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은 그만큼 군인의 징계처벌과 형사처벌의 구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8항·제31항·제32항은 영내를 더럽히거나 정숙함을 해치고 도박을 하는 군인에 대한 징계처벌을 명시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육군징벌령(조선)」이 반포될 당시 군영 또한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되어 위생문제 개선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군인이 도박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정부차원에서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⁶⁹⁾

지금까지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육군징벌령(조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 두 징벌령이 차이점보다 그 구조나 내용면에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육군징벌령(조선)」은 「육군징벌령(일본)」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앞서 「육군징벌령(조선)」의 제정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논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갑오개혁 당시 법령의 제정 과정이 국왕을 배제한 군국기무처 및 내각중심으로

69) 군인들이 도박을 하는 사례는 신문 기사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1899년 8월 2일자 『황성신문』 잡보란에 실린 「月終例設」의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도박에 대한 당시 병정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병정들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 의례히 가깝한 마음을 풀어 후련하게 할 요량으로 도박을 하는데 어찌 이를 금할 수 있는가”라고 하며 이를 단속하러 온 순검들에게 軍物을 들고 示威하였다. (이외 군인의 도박사례에 대한 기사는 『독립신문』 1896년 5월 28일 잡보; 『皇城新聞』 1898년 11월 2일 잡보, 「技兵被捉」; 『皇城新聞』 1899년 3월 28일 잡보, 「別別巡檢」; 『皇城新聞』 1901년 3월 22일 잡보, 「憲兵見效」 참조)

이루어졌으며, 의병봉기라는 사회적 소요로 인하여 시급히 반포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육군징벌령(일본)」과 차이점을 통해 살펴본 「육군징벌령(조선)」의 특징은 첫째, 징계권자의 징계권한이 비교적 폭넓게 명시되어 있으며, 둘째, 징계기간 및 징계벌목 상에서 신체적 제재의 수준이 높고, 셋째, 하사 이하의 하급군인의 경우 징계처벌시 신체적 제재와 함께 높은 감봉 비율이 병과(並科)되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요컨대 「육군징벌령(조선)」은 1881년의 「육군징벌령(일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반포되었지만, 「육군징벌령(일본)」에 비해 징계권자의 징계권한 및 징계벌목 그리고 감봉 비율이 전반적으로 군인의 비행을 통제하려는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육군징벌령(조선)」은 1906년에 새로운 「육군징벌령」이 반포됨으로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1906년에 반포된 「육군징벌령」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육군징벌령(조선)」의 특징이 모두 사라지고⁷⁰⁾ 「육군징벌령(일본)」, 즉 1881년 일본의 「육군징벌령」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처럼 1896년의 「육군징벌령(조선)」이 폐지되고 1906년의 「육군징벌령」이 「육군징벌령(일본)」을 큰 가감·수정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반포된 배경에는 제1차 한일협약(1904.8)으로 일본의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1906년의 「육군징벌령」이 대한제국에서 일본군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활용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70) 1906년에 반포된 「육군징벌령」은 「육군징벌령(일본)」과 비교해봤을 때 「육군징벌령(일본)」에서 하사와 병졸벌목에 금족과 고역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성·내용면에서 모두 동일하다.(하사와 병졸벌목에 금족과 고역을 추가한 것은 기존에 반포된 「육군징벌령(조선)」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즉 1906년에 반포된 「육군징벌령」은 기존에 반포된 1896년의 「육군징벌령(조선)」보다 일본의 「육군징벌령」과 유사한 측면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5. 자주적 군사법제도의 수립노력과 「육군법률」

1900년에 반포된 「육군법률」은 「대전회통」과 「대명률」, 그리고 「육군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반포된 신 법령들과 외국 육군형법의 내용을 모두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⁷¹⁾, 제1편 법례(法例), 제2편 죄례(罪例), 제3편 형례(刑例), 제4편 율례(律例)의 총 4개편 31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부터 제3편의 내용은 일반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1편 법례에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 법률 적용상 중요한 절차상 규정, 그리고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며 제2편 죄례에서는 범죄의 종류를, 제3편 형례는 규정된 형벌과 가감례(加減例)를 제시하고 있다.⁷²⁾ 제4편은 군형법으로서 「육군법률」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군인의 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형량을 명시하고 있다.

「육군법률」은 이전의 「대명률」과 「대전회통」이 이·호·예·병·형·공률(전)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편-장-조 구조로 되어있으며, <표 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899년 8월 25일에 법률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인율목록」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인율목록」은 1905년에 반포되는 「형법대전」의 초안 가운데 하나로서, 1897년부터 ‘구본신참’의 기치 아래 활동한 조선인 법률기초위원들의 자주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율목록」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편 법례, 제2편 죄례, 제3편 형례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제4편 율례 부분은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틀의 편명(編名), 장명(章名), 절명(節名)은 있으나 세부 조항이 없으며, 세부 조항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명률」·「대전회통」·「적도처단례」 등 기존

71) 凡例 一. 本 法律은 大典會通과 新頒法律과 附例大明律로 基礎를 作호고 外國陸軍刑法을 參互호야 集成호.

72) 특히 제1편에서는 哨兵·憲兵·豫備·後備 등 기존 법률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군사 용어들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육군법률」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豫備·後備 등 당시 일본 군사교범에서 사용되는 군사용어들이 「육군법률」에 등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군법률」이 당시 일본의 법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률 및 새롭게 반포된 법률에서 참고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⁷³⁾

〈표 7〉 「육군법률」과 「引律目錄」의 구성비교

「육군법률」		「인율목록」	
제1편 法例	제3편 刑例	제1편 法例	제3편 刑例
제1장 本法律施用權限	제1장 刑名及獄具	제1장 用法範圍	제1장 刑罰通則
제2장 告訴及聽理區域	제2장 主刑處分	제1절 本法律施用權限	제1절 刑名及獄具
제3장 拘拿格式	제3장 附加刑處分	제2절 告訴及聽理區域	제2절 主刑處分
제4장 名稱分析	제4장 獄具施用處分	제3절 拘拿及立證格式	제3절 附加刑處分
제5장 等級區別	제5장 公私罪處斷例	제4절 罪囚應禁物許條例	제4절 獄具施用處分
제6장 期限通規	제6장 知情不告 及藏匿者處斷例	제5절 期限通規	제5절 公私罪處斷例
제2편 罪例	제7장 數罪處斷例	제6절 名稱分析	제6절 知情不告 及藏匿者處斷例
제1장 犯罪原由	제8장 又犯處斷例	제7절 等級區別	제7절 數罪處斷例
제2장 數罪俱發	제9장 再犯處斷例	제8절 賊盜分類	제8절 又犯處斷例
제3장 罪中又犯	제10장 共犯處斷例	제2편 罪例	제9절 再犯處斷例
제4장 一罪再犯	제11장 未遂犯處斷例	제1장 犯罪分析	제10절 共犯處斷例
제5장 數人共犯	제12장 免罪及加減處分	제1절 犯罪原由	제11절 未遂犯處斷例
제6장 未遂犯	제13장 加減次序	제2절 數罪俱發	제12절 免罪及加減處分
제7장 不論罪	제14장 執刑禁限	제3절 罪中又犯	제13절 加減次序
	제15장 執刑及執行處分	제4절 一罪再犯	제14절 執刑禁限
	제16장 刑期計算	제5절 數人共犯	제15절 執刑及執行處分
	제17장 徵價處分	제6절 未遂犯罪	제16절 刑期計算
	제18장 收贖處分	제7절 不論罪類	제17절 徵價處分
	제19장 期滿免刑及復權		제18절 收贖處分
	제20장 保放規例 (제4편 律例 생략)		제19절 期滿免刑及復權
			제20절 保放規例

「인율목록」과 「육군법률」의 구조상 유사점은 군법기초위원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법률기초위원으로 활동한 신재영의 경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895년 6월 15일에 설치된 법률기초위원회는 1897년 10월 사실상 해체되었다가 다시 1899년 5월 22일 새롭게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여기에 1898년 4월부터 군법기초위원으로 활동한 신재영이 1895년 법률기초위원회활동 초창기부터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육군법률」은 이러한 「형법대전」의 초안 형태의 「인율목록」의 구조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육군법률」 또한 「인율목록」과 마찬가지로 1897년 이후 대한제국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된 자주적인 사법제도 정비과정의

73) 문준영, 앞의 논문, 46~54쪽.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육군법률」의 제4편 율례는 군인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응하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균형법으로서 「육군법률」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육군법률」의 제1편 법례, 제2편 죄례, 제3편 형례가 「인율목록」에 근거하였다면, 「육군법률」 제4편 율례는 「대명률」·「대전회통」 및 메이지 14년(1881)에 布告 제69호로 반포된 일본의 「육군형법」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육군법률」과 일본의 「육군형법」의 구성을 비교한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육군법률」의 제4편 율례는 특히 일본의 「육군형법」의 제2편 중죄경죄(重罪輕罪)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 8> 「육군법률」과 「육군형법」의 구성 비교

「육군법률」		「육군형법」
제1편 法例	제9장 再犯處斷例	제1편 總則
제1장 本法律施用權限	제10장 共犯處斷例	제1장 法例
제2장 告訴及聽理區域	제11장 未遂犯處斷例	제2장 刑例
제3장 拘拿格式	제12장 免罪及加減處分	제3장 加減例
제4장 名稱分析	제13장 加減次序	제4장 數罪俱發
제5장 等級區別	제14장 執刑禁限	제5장 數人共犯
제6장 期限通規	제15장 執刑及執行處分	제6장 未遂犯罪
제2편 罪例	제16장 刑期計算	
제1장 犯罪原由	제17장 徵償處分	제2편 重罪輕罪
제2장 數罪俱發	제18장 收贖處分	제1장 反亂
제3장 罪中又犯	제19장 期滿免刑及復權	제2장 抗命
제4장 一罪再犯	제20장 保放規例	제3장 擅權
제5장 數人共犯		제4장 辱職
제6장 未遂犯	제4편 律例	제5장 暴行
제7장 不論罪	제1장 結黨作亂律	제6장 侮辱
제3편 刑例	제2장 命令違抗律	제7장 違令
제1장 刑名及獄具	제3장 權外擅行律	제8장 逃亡
제2장 主刑處分	제4장 辱職律	제9장 詐僞
제3장 附加刑處分	제5장 溺職律	제10장 結黨
제4장 獄具施用處分	제6장 違期律	
제5장 公私罪處斷例	제7장 失誤軍機律	
제6장 知情不告及藏匿者處斷例	제8장 暴行律	
제7장 數罪處斷例	제9장 殺傷律	
제8장 又犯處斷例	제10장 規避律	
	제11장 逃亡律	
	제12장 詐僞律	

「육군법률」 제4편 율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육군형법」에는 보이지 않는 제5장 낙직률(溺職律), 제6장 위기율(違期律), 제10장 규피율(規避律)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직률은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위기율은 각종 기한을 어겼을 경우, 규피율은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이 3개의 장은 군인들의 평시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군인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 군형법이 이처럼 평시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은 「대명률」과 「대전회통」의 내용을 축조(逐條)하는 과정에서 병률·병전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육군형법」의 경우 제1장과 제10장에 각각 반란과 결당(結黨)을 구분하여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육군법률」은 제1장에서 결당작란(結黨作亂)이라고 하여 결당과 반란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즉 군인들이 당을 결성하는 행위를 반란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육군법률」은 본 법률 제203조, 제277조, 제285조에 걸쳐 군인들의 결당뿐만 아니라 군인이 난언(亂言)하여 일반 백성들을 동요시켜 반란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⁷⁴⁾ 또한 일본의 「육군형법」에서는 군인이 당을 결성해 난을 일으켰더라도 군수품을 지급한 자는 유기유형에 처하게 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해당 형에서 1등씩 감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⁷⁵⁾, 「육군법률」의 경우 미수에 대한 감형 없이

74) 第二百三條 軍인이 第四條의 掲載한 所犯을 除한 外에 政府를 顛覆한거나 軍紀를 紊亂한거나 其他人命財産을 侵損한 目的으로 黨을 結한 亂을 作한 者는 死刑에 處해되 黨에 未至한 者도 同論한이다.

第二百七十七條 軍인이 上官의 命令을 違抗한거나 職務를 瀆濫한거나 常典을 違背한 左開의 所犯이 有한 者는 竝히 死刑이며 部下로 凍餓케한거나 離散케한 者는 一名에 禁獄三個月이며 每一名에 一等을 加해되 死刑에 入함이라

一. 部下나 良民을 激變한 亂을 作케한 者.

二. 敵으로 侵入케한 者.

三. 地池를 失陷한 者

第二百八十五條 軍인이 亂言을 造한 政府를 顛覆한거나 政事를 變更한기를 謀한 者는 流十五年이며 因한 人心을 煽動한 者는 流終身이며 亂에 至케한 者는 死刑에 處함이라

75) 第五十條 軍人黨ヲ結ヒ擅ニ兵器ヲ執リ反亂ヲ爲ス者首魁教唆者及ヒ群衆ノ指揮ヲ爲シ若

미수까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으로 논하고 예비 또는 음모를 꾀한 자만 해당 형에서 각 1등, 2등을 감하고 있다.⁷⁶⁾

군인들의 결당작난에 대한 조항과 더불어 일본의 「육군형법」과 비교했을 때 「육군법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외국과 관련된 군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육군법률」에서 외국과 관련된 규정은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6조, 제282조로 대부분의 내용이 외국에 붙어서 본국에 대해 저항하거나 본국과 공수동맹을 맺은 외국과의 화친을 저해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과 전쟁의 발단을 제공 하는 경우이며 이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형량인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⁷⁷⁾

이렇게 「육군법률」이 일본의 「육군형법」을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クハ樞要ノ職務ニ從事スル者ハ死刑ニ處ス其指揮ヲ爲シ樞要ノ職務ニ從事スト雖モ情狀輕キ者ハ無期流刑ニ處ス 諸般ノ職務ヲ司リ若クハ兵器彈藥其他軍需ノ物品ヲ資給スル者ハ有期流刑ニ處シ其情狀輕キ者ハ重禁獄ニ處 附和シテ其事ニ服行スル者ハ二年以上五年以下ノ輕禁錮ノ處ス

第六十二條 軍人前數條ニ揭クル所ノ罪ヲ犯サントシテ未ク遂ケサル者級ヒ其豫備ヲ爲ス者ハ各本條ニ照シテ一等ヲ減ス 其陰謀ヲ爲シ未ク豫備ニ至ラサル者ハ二等ヲ減ス

76) 第二百三條 軍人이 第四條의 揭載한 所犯을 除한 外에 政府를 顛覆하거나 軍紀를 紊亂하거나 其他人命財産을 侵損할 目的으로 黨을 結하거나 亂을 作한 者는 死刑 에處하되 黨에 未至한 者도 同論함이라

第二百十條 軍人이 本章諸條의 罪를 犯한(㉔) 已行하고 未遂한 者는 各히 本律과 同論하고 預備만하고 未行한者는 一等이며 陰謀만하고 預備에 不至한 者는 二等을 減함이라

77) 第二百五條 軍人이 敵을 利케함을 爲해야 左開諸項을 犯한者는 竝히 死刑에 處함이라
…… 九. 本國이나 攻守同盟國의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하거나 隱匿하거나 遲緩하거나 變造한 者

第二百八條 軍人이 敵前이나 軍中에 在해야 左開諸項을 犯한 者는 竝히 死刑에 處함이라

一. 外國에 附從해야 本國을 抗敵한 者

二. 本國에 對해야 攻守同盟이 有한 國을 抗敵한 者

第二百九條 軍人이 本國이 外國과 宣戰에는 不至하얏스나 戰端을 將開할 時에 本章諸條의 所犯이 有한 者는 各히 本律과 同論함이라

第二百十六條 軍人이 外國이 互相交戰할 時에 本國의 局外中立하는 布告를 違背한 者는 流二年이며 因해야戰端을 開케한 者는 死刑에 處함이라

第二百八十二條 軍人이 外國의 和親을 破하거나 外國에 損害를 加할 所爲를 行한 者는 役十年이며 因해야 戰端을 開케한 者는 死刑에 處함이라

일본의 「육군형법」과는 달리 군인의 결당작난과 외국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게 된 배경에는, 1895년 10월 을미사변을 시작으로 정치적 사건에 군인들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을미사변에는 이노우에의 건의에 따라 편성된 훈련대의 대대장 참령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등이 가담하였으며, 특히 우범선의 경우 훈련대 제2대대장으로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 수비대와 함께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황후 시해과정에 직접 간여하였다. 그리고 1898년 6월에는 안경수가 중심이 되어 황제를 위협하여 황태자가 국정을 대리하는 쿠데타 모의에 친위 제1연대장 김재은, 친위 제3대대장 이남희, 시위 제2대대장 이종립, 전 시위 제2대대 중대장 이용한 등이 개입하였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이남희가 모의를 밀고함으로써 실패하고, 주모자 안경수는 진고개의 일본인 조계지로 도주하였다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⁷⁸⁾

한편 갑오개혁 실패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박영효가 1898년 10월 그의 측근인 이규완, 황철을 조선에 파견하여 정변을 모의하는 계획에서도 군인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 포섭된 위관 신창희, 이민직 등은 정변 당일 날 부하병사들을 이끌고 대궐에 진입, 미리 준비한 폭약을 터트리고 궁궐 내 각 지역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지만 이들이 밀고하여 정변 모의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⁷⁹⁾ 이와 같이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기에 걸쳐 각종 정변모의에 군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무력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 정변의 중심에는 박영효와 같이 망명한 개화파세력과 그 배후에 일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육군법률」에는 군인들의 결당작난과 외국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군법률」 제229조는 일본의 「육군형법」과 「대명률」, 「대전회통」에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으로, 출사(出使)한 군인이 각 지방에

78) 『高宗實錄』 卷37, 1898년 8월 14일; 『官報』 제1030호, 1898년 8월 17일, 彙報; 『官報』, 제1031호, 1898년 8월 18일, 彙報.

79) 『高宗實錄』 卷40, 1900년 2월 9일; 『官報』 제1496호, 1900년 2월 13일, 彙報.

있어 타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사법관이 아닌데 소송을 수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⁸⁰⁾ 갑오개혁 이후 통상적으로 지방관이 겸임하던 군사지휘관이 독립된 직책으로 바뀌면서, 지방에 군사지휘관과 지방관이 양립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업무관할 측면에서 이들 간의 마찰이 잦아지게 되었다. 이에 1896년 9월에 군부에서는 진위대와 지방대에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렸다.

- ① 대대장은 한 곳의 사무를 주관하는 영관이나 관찰사와는 공문 왕복 시 대등하게 조회하고 각 군수에게는 훈령·지령을 하며, 대대장을 제외한 각 위관은 관찰사에게 칙임관 또는 주임관에 따라 예를 넉넉하게 하여 공경히 대하고 각 지방군수에게는 평등한 예를 따르고
- ② 하사와 병졸은 각 지방 칙·주임관에게 일체 경례하여 본대 영·위관에게 공경히 대하는 것과 차이가 없게 하고
- ③ 군인이라도 혹 소송으로 인해 재판할 때에는 지방 재판소에서 불러서 신문을 하기를 평민과 다름이 없게 하기로 각 지방 관원에게 훈령하였으니, 본대에서 이 사연을 알고 지방관이 소송으로 인해 병정을 불러가는 것을 월권으로 알지 말고
- ④ 병졸이 혹 군기를 가지고 무리를 모아 행동하는 자는 우두머리를 찾아 총으로 죽이고
- ⑤ 하사와 병정들이 마을에 한가히 돌아다니는 것을 엄히 금하고 다만 공사로 인해 밖에 출입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사유를 자세히 말하여 공문을 주고
- ⑥ 하사와 병정이 관가에 공문을 가지지 않고 밖에 나가 마을에 폐단을 끼치면 그 사람은 먼저 파면하고 군법으로 증치하고, 다만 이 이상의 법을 범한 병정들을 본대에서는 아직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관에게 먼저 잡힐 때에는 본 지방 재판소에 가두고 본대에 공문하거든 본대에서는 즉시 파면하고 재판소로 통첩하고

80) 第二百二十九條 出使^{ᄃᆞ} 軍人^{ᄃᆞ} 이 各地方^{ᄃᆞ} 에 在^{ᄃᆞ}야 他人^{ᄃᆞ}의 職務^{ᄃᆞ}를 于預^{ᄃᆞ}거나 司法官^{ᄃᆞ}이 아닌^{ᄃᆞ} 訴訟^{ᄃᆞ}을 受理^{ᄃᆞ}ᄃᆞ 者^{ᄃᆞ}는 笞八十^{ᄃᆞ}이며 因^{ᄃᆞ}야 所犯^{ᄃᆞ}이 有^{ᄃᆞ}ᄃᆞ 者^{ᄃᆞ}는 各^{ᄃᆞ}히 本罪^{ᄃᆞ}에 一^{ᄃᆞ}等^{ᄃᆞ}을 加^{ᄃᆞ}ᄃᆞ이라

- ⑦ 군병 등이 혹 무리를 밟고 남의 산에 억지로 장사를 지내거나(勒葬), 남의 묘를 억지로 파거나 부녀를 겁간하거나 사사로이 빚을 억지로 받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시정에서 억지로 팔거든(抑賣) 본대에서는 우선 파면하고 지방 재판소로 보내 판결하게 하고 혹 지방관에게 먼저 잡힐 때에는 6조의 규칙을 따라 다스리고
- ⑧ 하사와 병졸 가운데 혹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술에 취하거나 잡계와 악습이 있거든 범한바 경중에 따라 등급을 짐작하되 중법은 6조, 7조 규칙을 따라 쓰라고 하였더라.⁸¹⁾

군부는 위의 내용과 같이 지방관과 지방에 주둔하는 부대의 군사지휘관의 관계를 설정하고, 군인과 관련된 소송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들 간의 분규를 막고자 하였다. 하지만 진위대 향관이 업무수행차 관찰사와 만나는 과정에서 관찰사에게 ‘사또’라고 칭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비가 붙을 정도로 지방관과 군사지휘관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⁸²⁾ 특히 이들 양자 간의 마찰은 군인이 민사, 즉 민송(民訟)에 개입하여 지방관의 업무 관할에 대해 월권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898년 5월에는 “백성 다스리는 일과 군정 간섭하는 일이 각기 맡은 관원이 있으니 지방관들의 권리를 침범하지 말아 병정과 백성이 서로 싸워 군대와 각 군이 서로 갈등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⁸³⁾라는 내용의 훈령이 군부에서 각 진위대와 각 지방대에 하달되기도 하였다. 이는 그만큼 군인이 민사, 즉 민송에 개입하여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이 타인의 직사에 간섭한 사례로 1901년 2월 19일자 『관보』에 실린 참위 목영석의 형사처벌 기록을 들 수 있다. 판결 기록에 따르면 진위 제4연대 제2대대 소대장 목영석 참위는 민인(民人) 신지송으로부터 김경홍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81) 『독립신문』 1896년 9월 17일 잡보.

82) 『독립신문』 1899년 4월 28일 잡보.

83) 『독립신문』 1898년 5월 24일 각부신문.

받았고, 따라서 목영석 참위는 김경홍을 여점(旅店)으로 불러들여 3차례 대질을 하였다. 이에 대해 육군법원에서는 군인이 민송에 간섭하여 민인을 불러와서 대질하였다 하여 「육군법률」 제229조에 근거하여 태80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1901년 11월 4일자 『관보』에 실린 진위 제5연대 제1대대 민하식 참위의 사례에 따르면 충주 사천에 거주하는 유정환에게 사적으로 감정이 있어 민하식 참위가 병정 박영신, 구태봉을 시켜 유정환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사사로이 민인을 체포하였다. 이에 육군법원에서는 마음대로 병사를 보내어 민인을 체포하는 것은 월권한 죄가 있다고 하여 「육군법률」 제229조에 의해 태 80의 판결을 내렸다.

군인이 타인의 직사에 간섭하는 경우는 대부분 군인이 사법관이 아님에도 민송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범죄는 중앙군보다는 특히 지방에 주둔하는 지방대나 진위대 소속의 군인에게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갑오개혁 이전에 지방관이 군사 지휘관을 겸임하면서 지방의 사법업무를 담당했던 관례와 의식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갑오개혁 당시 지방군사조직이 혁파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 원칙적으로 군사지휘관을 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라지면서 지방 사법업무는 지방관의 고유한 임무가 되었다. 그러나 민송의 수요에 비해 전문화된 사법관들의 공급이 부족하여 지방관에게 여전히 사법업무가 위임되는 상황에서 ‘지방관=군사지휘관=지방사법관’이라는 갑오개혁 이전의 관례와 의식이 남아있어 군인이 민송에 개입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된 것이다.⁸⁴⁾

「육군법률」 제229조와 더불어 군무상의 문서에 증감하거나 오기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제254조와 제308조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⁵⁾ 이 두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궁궐 및 각 파수지에서 경계근무를

84) 도면회, 앞의 논문, 130~142쪽 참조.

85) 第二百五十四條 軍人이 上官에게 申報호는 文書나 磨勘호는 文書에 失錯호는 者는 笞五十이며 其他文書에는 笞三十에 處호고 因호야 人員錢糧數目を 錯亂호는 者는 笞一百에 處호되 未施行호는 者는 各히 二等을 減호리라
第三百八條 軍人이 軍務上의 制書를 增減호는 者는 役終身에 處호되 知情호고 聽行호

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직무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관보』의 「사법」란에 실린 군인들의 범죄행위 처벌과 정에서 제254조와 제308조가 빈번히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로 미루어보아, 당시 이와 관련된 군인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육군법률」 상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⁸⁶⁾

者는 同罪호고 但行移傳寫에失誤호는 者는 笞八十이며 官文書를 增減호는 者는 笞六十에 處호되 錢糧이나 人員에 增減이 有호는 者는 禁獄三個月이며 未施行호는 者는 各히 三等을 減호니라

86) 1900년 9월 「육군법률」 반포이후 1907년 8월 군대해산까지 『관보』의 「사법」란에 실린 군인의사법처리결과 중에서 「육군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은 약 110건 정도이다. 이 사건들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육군법률」 각 조항의 빈도수를 확인하면 아래 표와 같다.

조 항	빈 도 수	조 항 내 용	비 고
제18조	80회 이상	칙·주임관 拿致방법	법례
제135조	35회 이상	數罪가 동시에 俱發할경우	죄례
제234조	20회 이상	檢束을 不嚴	울례
제99조	10회 이상	笞刑 정의	형례
제95조		死刑 정의	형례
제130조		범죄가 公罪와 관련있을 경우	형례
제308조		軍務上의 制書를 增減	울례
제221조		信地를 擅離	울례
제251조	5회 이상	報告 不嚴	울례
제254조		申報호는 文書나 磨勘호는 文書에 失錯	울례
제229조		各地方에 在호야 他人의 職事를 于預	울례
제294조		同等이나下 等된 者를 毆傷	울례
제212조		制書를 奉호야 違	울례

표를 살펴보면 「육군법률」의 제1편 법례, 제2편 죄례, 제3편 형례에 해당되는 제18조, 제135조, 제99조, 제95조, 제130조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육군법률」의 법례, 죄례, 형례편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일반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군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또는 「육군법률」 적용상의 절차 등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육군법률」의 각 조항의 적용빈도를 통해 당시 군인의 범죄행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형벌을 명시한 울례편의 조항들을 주목해야 한다.

위의 표에서 「육군법률」 울례편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234조, 제308조, 제221조, 제251조, 제254조, 제229조, 제294조, 제212조로 행동을 단속하지 못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시한 제234조, 제221조, 제251조는 군인의 직무특성상 가장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인이 군무상의 문서에 오기하여 처벌받는 사례로는 1900년 4월 4일 『관보』에 실린 참위 조홍련의 판결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종성대 참위 조홍련은 무산군에 주둔했을 당시 군수와 관련된 문서에 병액(兵額)과 전수(錢數)를 고쳐서 작성했고, 대대장 서리로 근무할 때 해당 문서를 결재하여 군부로 넘겼다. 그리고 군부는 해당문서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예산을 집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부대 운영비가 약 2천5백냥이 초과되어 지급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육군법원은 「육군법률」 제308조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금옥 2개월의 형량을 내렸다. 또한 1902년 10월 21일 『관보』에 기록된 진위 제6연대 제1대대 前 향관 이근상의 경우 이근상이 향관직에 있을 때 부대 경비를 기록하는 문서에 보속비(保續費)를 원래 수치보다 넘게 계산하고 거둬 기록하여 「육군법률」 제308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금옥 2개월의 형량을 판결받았다.

이 당시 군무상의 문서를 위조하여 처벌받는 사례는 중앙군보다는 지방대·진위대와 같은 지방군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대한제국기 재정운영 방식은 지방재정을 해체하고 모든 재정을 중앙으로 집결시키는 형태였으나 지방군인 진위대의 경우는 부대경비의 일부만 군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갑오개혁 이전과 동일하게 지방의 여러 군(郡)들이 직접 해당 부대로 납부하고 있었다.⁸⁷⁾ 따라서 중앙군보다는 지방군에서 부대 운영 경비를 기록한 문서의 경우 위조를 하거나 오기를 하기 더 용이하였으며 따라서 지방군인들이 문서를 고의로 조작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요컨대 「육군법률」은 「육군징벌령」과 마찬가지로 군인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과 기능으로서 제정·활용되었다. 그러나 1881년 일본의 「육군징벌령」을 상당 부분 수용한 조선의 「육군징벌령」과는 달리 「육군법률」은

하지만 제308조, 제254조, 제229조 등은 군인이 직무특성과는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 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87) 김기성, 「대한제국기 진위대의 증설과 군부예산의 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35~44쪽.

대한제국기 자주적인 군사법제도의 수립노력의 한 결과물로서, 일본의 「육군형법」을 일부 수용하였지만 그 구조나 내용은 일본의 「육군형법」과 동일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군법률」은 군인이 정변에 가담해 이에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황제권의 안정적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당작난과 외국에 부화(附和)와 관련된 조항이 있었다.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군인의 민사간여, 군무상 문서의 증감에 대한 조항도 명시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육군법률」은 자주독립 국가자 황제국이라는 대한제국의 특성과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군사법 법령임을 알 수 있다.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이후 8월 26일에 칙령 제13호로 「군부소관 관청관제 및 조규를 폐지하는 건」이 하달되면서 1900년 칙령 제34호로 「육군감옥관제」, 1901년 칙령 제2호 및 제3호로 「육군법원처무규칙」·「육군감옥규칙」, 1904년에는 조칙으로 「육군법원관제」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육군법률」의 적용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행정기관의 관제를 명시한 제도들이 모두 폐지되면서 「육군법률」도 자연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6. 맺음말

1901년 5월 21일자 『관보』에는 진위 제5연대 제1대대 이천 분점(利川分站)의 병사 임상룡이 이칠손과 함께 민인 이정을 구타 및 살상하고, 민가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실렸다. 이에 따르면 간범(干犯) 이칠손의 경우 판결이 나기 전에 옥사에서 죽어 따로 사건에 대한 처벌이 없었으며, 수범(手犯) 임상룡은 「육군법률」에 근거하여 포살(砲殺)형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은 이 두 병사의 소대장 또한 경계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 하여 해당 소대장에게도 지휘책임을

물어 3주일 중근신 처벌을 내렸다.⁸⁸⁾ 이 사건은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의 운영형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서,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군징계령과 군형법의 관계로서 서로 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6년 1월 24일 칙령 제11호로 반포된 「육군징벌령」은 1896년을 전후하여 지방제도 개혁으로 인한 지방 군사조직의 해체, 을미의병의 봉기 및 친위·진위대로 구분되는 전국적인 군 재편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해산된 지방군사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자 반포된 법령이었다. 「육군징벌령」이 반포되기까지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갑오개혁 당시 국왕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한 개화파세력 중심의 내각이 「육군징벌령」 반포의 주체가 되어 신속하게 의병봉기와 같은 불안한 정치적 국면을 벗어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육군징벌령」은 메이지 14년 일본의 「육군징벌령」과 구조 및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조선의 「육군징벌령」이 일본의 「육군징벌령」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육군징벌령」과는 달리 1896년의 「육군징벌령」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량범위가 넓고 태벌과 같은 신체적 제재의 벌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 군인의 ‘통제’를 위한 기능이 일본의 「육군징벌령」보다는 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약 2년의 준비기간을 통해 1900년 9월 14일 법률 제4호로 반포된 「육군법률」은 1897년부터 구분신참의 기치 아래 자주적인 사법제도의 정비노력의 산물 중 하나였다. 「육군법률」은 『대전회통』 및 『대명률』과 같은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한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 황제가 친총하는 군의 규모와 위상에 맞게 군이 재편되고 그 규모가 증대되면서 발생하였던 군인의 각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88) 『官報』 제1892호, 1901년 5월 21일, 彙報.

특히 「육군법률」은 군인이 당을 결성하여 난을 일으키거나 외국에 붙어 쫓는 행위를 엄금함으로써 황제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즉 「육군법률」의 경우 갑오개혁 당시 내각이 주체가 되어 반포한 「육군징벌령」과 비교해 보면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이 확대되었던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복고적·보수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육군법률」은 군인이 민중에 간여하거나 군무상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당시 군인들이 빈번하게 일으켰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통제하고자 했다.

이처럼 「육군징벌령」은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의 비행을 처벌하는 ‘군징계령’으로, 「육군법률」은 징계차원으로는 부족한 군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군형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리고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가지는 역사적 위상과 의의는 일본의 지원 아래 개화세력이 추진한 ‘갑오개혁’과 자주독립국이자 황제국임을 선포한 ‘대한제국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변동 가운데에서 보다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갑오개혁, 대한제국, 군사법, 육군징벌령, 육군법률

<ABSTRACT>

Reformation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after the Gabo Reform: The Disciplinary Provisions for the Army and the Legal Code for the Army

Kim, Hye-young

Military reforms during the Gabo Reform were continued even after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in 1897, with a goal of realizing the slogan “Rich Country, Strong Military (*puguk kangbyōng*)” and strengthening the imperial power. The reorganized military consisted of the palace guards (*ch'inwidae*) and the imperial guards (*siwidae*) in the capital as well as the regional forces (*chinwidae*) and the local forces (*chibangdae*) in the provinces. The military was reorganized and expanded in this manner, and the Chosŏn government sought to manage and regulate it by modifying military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Disciplinary Provisions for the Army (*Yukkun jingbölllyōng*) on January 24th, 1896 (Edict No.11) and the Legal Code for the Army (*Yukkun pōmnyul*) on September 14th, 1900(Ordinance No.4).

The Disciplinary Provisions was proclaimed in the following context of the dissolution of local military organizations following the reforms in loc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nationwide military reorganization. Through the Disciplinary Provisions, the Chosŏn government sought to prevent the dissolved local forces from joining the Resistance (*ūibyōng*) and to encourage them into joining the newly organized military organization. The Disciplinary Provisions was actively modeled after its counterpart in Japan (1881), but it aimed for a tighter control over the armed forces as one can see in a wider discretionary power of the disciplinary authority and the existence of physical punishments.

After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the military came to be directly controlled by the emperor, and it was reorganized and expanded further to reflect this new status. These changes were accompanied by an increasing number of soldiers committing crimes, and it became hard to control such crimes by the Disciplinary Provisions alone. Therefore, the imperial government proclaimed the Legal Code for the Army, which was basically a military criminal law.

The Legal Code was legislated after two years of preparation under the slogan of “New Things Supplementing the Principle of Tradition (*kubon sinch'am*).” It consists of four parts and three hundred seventeen articles. When we compare it to existing legal codes such as Japan’s Army Criminal Code (1881), the Ming Code (*Da Ming lü*), and the Collection of Laws (*Taejŏn hoet'ong*), a few articles in the Legal Code stand out. For example, there is an article that deals with soldiers collaborating with political factions or foreign nations, and this reflected the reality of military involvement in past coups led by the Enlightenment Faction (*kaehwap'a*). There is also an article on how to punish an officer who acts as a legal authority in provinces. This reflected the reality of military officers still accepting and dealing with civil lawsuits and some local soldiers even forging military papers in order to embezzle some money.

The Disciplinary Provisions was used as a “disciplinary regulation” that dealt with soldiers’ misdeeds not covered by criminal law, while the Legal Code was used as a “military criminal law” that dealt with soldiers’ crimes that went beyond the scope of the Disciplinary Provisions. In short, they complemented each other in actual operation. We need to analyze them within the bigger context of the Gabo Reform and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in order to appreciate fully the historical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m.

Key Word : Gabo Reform, Korean Empire, Military Law,
Disciplinary Provisions for the Army, Legal Code for the Army